산업통상부 공고 제 2026 - 675호

「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」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11월 9일

산업통상부장관

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 개정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자 및 검정기관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, 충전기 기술 발전과 국제기준 부합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·반영하여 기술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(적산전력량 비교법 도입) 재검정 시 계량기의 개폐없이 전력량 측정이 가능한 시험 도입하여 사업자와 검정기관의 편이 도모

나. (기존 봉인 유효성 인정) 계량기의 개폐없이 재검정 수행을 위한 기존 봉인의 유효성 인정

다. (양방향 충전 등 용어 정비) 전기자동차 충전기 적용범위, 용어 등의 정비를 통해 기술기준 내용 명확화

3. 의견제출

이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(참조 :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/ 주소 :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・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・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고, 관련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tir.go.kr → 예산·법령→ 입법·행정예고 → 행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문의처(의견제출) 연락처

-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-870-5515, jcpark26@korea.kr